규 칙

# 제1회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2017. 1. 26.)에서 의결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10일

해남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그 때 기계

해남군 규칙 제1243호 붙임 해남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1부.

## 해남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해남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회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2017. 1. 26.)에서 의결된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15일

해남군 규칙 제1244호 붙임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

###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 ① 군 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 2. 각종 민속,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 3. 초청 기관의 장, 향우들에 대한 환영행사
- 4.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② 제1항제2호의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운영)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군민의 날 행사일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① 규칙 제2조제2항의 행사 추진을 위해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해남군체육회상임부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해남군의원 1명,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해남군체육회사무국장, 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과장, 행정지원과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기념행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군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군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협의
- 3. 그 밖에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승계) ① 군수는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각 기관 및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그 기관 및 단체의 임원에서 사직할 경우 동 위원이 당연 해촉된 걸로 보고 차기 임원이 동 위원직을 승계한다. 다만, 차기 임원이 미 선정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민의 날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회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2017. 1. 26.)에서 의결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10일

해남군 규칙 제1245호 붙임 해남군 장학시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4세 이하의 학생

종전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대학생(다만, 대학생이 타 지역 주소를 둔 경우도 인정한다)

제2조제2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학생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학생 선발시기와 규모는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학금액 : 150만원

제4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학금액: 100만원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능장"을 각각 "기능영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남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해남군내 중·고교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1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선발대상: 제2조제1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최근 1년간 도 단위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한 전국대회 입상자 및

전남도대회 입상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의 수상자 제5호제2호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내 고교 성적우수 장학생 (학교장 추천)

제5조제2호가목 중 "6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황산고등학교, 화원고등학교"를 "화원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추천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11% 이내인 학생

마. 배점기준: 성적은 70점 만점, 소득은 30점 만점으로 한다.(이 경우 소득점수는 별표 2에 따른 재산세 점수와 별표 3에 따른 건강보험료 점수를 50%씩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5조제3호나목 중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이화여대"를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납입등록금 중 250만원"을 "학업장려금(생활비 등)으로 1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수"를 "수 있으며, 식사·차량 등 편의를 제공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2년제"를 "2·3년제"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 과 같이 한다.

나. 장학금액: 1명당 150만원

제5조제4호다목 중 "해남군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해남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600천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장학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별표 1을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생 신청자격 및 제외 기준) 장학생의 신청자격 및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장학생 신청자격 및 제외 기준) 
1. 장학생 신청자격은 학생 본인 및 친권자(학부모)의 주민등록이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해남군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학생으로 한다.	1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나.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졸업하고 관외 중·고등학교에재학 중인 24세 이하의 학생
나. 30세 이하의 대학생(다만, 4년제 대학생이 타 지역 주소를 둔 경우도 인정한다)	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대학생(다만, 대학생이 타 지역 주소를 둔 경우도 인정한다)
<ol> <li>장학생 신청 제외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li> </ol>	2
<u>&lt;신 설&gt;</u>	<u>가.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u> <u>재학 중인 학생</u>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3조(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제3조(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 선발시기와 규모는 별표 1과	① 장학생 선발시기와 규모는 해남군
<u>같다</u> .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 ②・③ (생 략)

- 제4조(명문고 육성 장학생) 명문고 제4조(명 육성 장학생은 명문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
  - 1. 성적 최우수 장학생 (해남고등 학교장 추천)

가. (생략)

나. 장학금액 : 1년간 기숙사비와 📗 수업료 전액

다. · 라. (생 략)

2. 성적 우수 장학생 (해남고등학교장 추 2. -----첡)

가. (생략)

나. 장학금액 : 1년간 기숙사비와 수업료 일부

다. · 라. (생 략)

- 3. 특기 장학생 (해남고등학교장 추 | <삭 제> 천)
  - 가. 선발인원: 6명 이내
  - 나. 장학금액: 1년간 수업료 전액
  - 다. 추천기준: 해남고등학교 재학생 으로서 예체능 특기생으로 선발된 학생
  - 라. 우선순위 : 각종 대회 입상 성적이 우수한 학생 우선 선정
- 4. (생략)
- 5. 기능장 장학생 (해남공업고등학교장 추 5. 기능 영재 ------

정	한	다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명문고 육성	장학생)
	<u>.</u>

가. (현행과 같음)

나. 장학금액 : 150만원

다. • 라.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장학금액 : 100만원

다. • 라. (현행과 같음)

- 4. (현행과 같음)

첡)

가. · 나. (생 략)

다. 추천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50% 이내이면서 기능장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라. (생략)

- 제5조(해남 미래인재 장학생) 해남 미래인재 장학생은 해남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해남군내 중 · 고교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
  - 1. 예체능 등 특기자 장학생 (학교 장 추천 및 본인 신청)

가. 선발인원 : 10명 이내

나. 장학금액: 1명당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다. (생략)

라. 선정기준 : 직전학기 도 단위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한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및 전남도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의 수상자

마. (생략)

천)

가. 선발인원: 6명 이내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기능영재</u>
라. (현행과 같음)
제5조(해남 미래인재 장학생)
<u>다음</u>
1
가 <u>20명</u>
나 <u>100</u> 만원
다. (현행과 같음)
라. 선발대상 : 제2조제1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권계소그 귀그 1나라 모 다시

학생으로 최근 1년간 도 단위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한 전국대회 입상자 및 전남도대회 입상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의 수상자 마. (현행과 같음)

2. 봉사·선행 장학생 (학교장 추 2. 관내 고교 성적우수 장학생 (학교장 추 천)

가. ----- <u>10명</u> --

나. 장학금액 : 1명당 <u>60만원</u>	나 <u>100</u> 만원
다. 선발대상 : 송지고등학교, <u>황산</u>	다
고등학교, 화원고등학교 재학생	화원고등학교
라. 추천기준 : 사회봉사 실적이	라. 추천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뛰어난 모범	<u>상위 11% 이내인 학생</u>
학생 및 사회적으로 선행을 행한	
부모가 어려움을 당한 경우 그 자녀	
마. 선정기준 : 봉사와 선행의 정도가	마. 배점기준 : 성적은 70점 만점,
우수한자 우선 선정	소득은 30점 만점으로 한다.(이 경우 소득
	점수는 별표 2에 따른 재산세 점수와
	별표 3에 따른 건강보험료 점수를
	50%씩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우수대학 입학 장학생 (고등학교장 추	3
천)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장학금액 : 1명당 연 <u>500만원</u> 이내	나 <u>300</u> 만원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선정기준 : 서울대, 연세대,	라
고려대, <u>이화여대</u> , 한국과학	<u>&lt;</u> 삭 제>
기술원,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 각 대학 의ㆍ치ㆍ	
한의학 계열 입학생	
마. 지급기준 : 매학기 <u>납입등록금</u>	마 <u>학업장려금</u>
중 250만원 범위에서 졸업할	<u>(생활비 등)으로 150만원</u>
때까지 지급하되,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매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휴학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제적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바. 지급조건: 군수는 봉사활동 등 지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장학금 지급조건으로 할 수 있음

- 4. 우수인재 대학 장학생 (본인 신청)가. 선발인원 : 40명(4년제 30명,2년제 10명)
  - <u>나. 장학금액 : 4년제-1명당 150만원,</u> 2년제-1명당 100만원
  - 다. 신청자격: 해남군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사람 라. (생 략)
- 5. (생략)
- 6. 관외 고교 성적우수 장학생가. (생 략)

나. 장학금액 : 1명당 <u>600천원</u> 다.·라. (생 략)

<신 설>

바
수 있으며, 식사·차량 등 편의를 제공할 수
4
가
<u>2·3년제</u>
나. 장학금액 : 1명당 150만원
다 <u>해남 관내 초·</u>
중・고등학교 중 어느 하나
라.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가. (현행과 같음)
나 <u>100만원</u>
다.·라. (현행과 같음)
제12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장학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별표 1]

## 장학생 선발 규모(제3조제1항 관련)

(단위:천원)

			선발		지 원 규 모			
구 	분	장학생명	시기	대상	인원	금액 (1명당/년)	비고	
;	계	11개 분야	연2회					
		성적최우 <del>수</del> 장학생	2월	해남고 1,2,3학년	33	기숙사비, 수업료 전액		
	해남고등 학교	성적우수 장학생	2월	해남고 1학년	20명 이내	기숙사비, 수업료 일부	기숙사비의 50%, 수업료의 70%	
명문고 육 성 장학생	निया	특기 장학생	2월	해남고 1,2,3학년	6명 이내	수업료 전액		
		희 망 장학생	8월	해남고 1,2,3학년	30명 이내	600		
	해남공 업고등 학교	기능장 장학생	8월	해남공고 1,2,3학년	20명 이내	1,000		
	초중고 생	예체능 등 특기자 장학생	8월	군 관내 초중고 예체능 특기자	5명 이내	초 200 중 300 고 600		
	관 내 고교생	봉사·선행 장학생	8월	군 관내 고교생	6명 이내	600	송지고등학교, 황산고등학교, 화원고등학교 재학생	
해 남 미 래 인 재	관 외 고교생	관외 고교 성적우수 장학생	8월	해남군 중학교 출신 관외 고등학생	10명	600		
장학생		우수대학입학 장학생	2월	군 관내 고교 출신	입학생 전원	5,000 (졸업 시까지)		
	22.2	우수인재 대학장학생 (4년제 대학)	8월	해남군 출 신 대학생	30	1,500		
	대학생	우수인재 대학장학생 (2년제 대학)	8월	해남군 출 신 전문대생	10	1,000		
		글로벌 리더장학생	8월	해남군출신 해외유학생	3명 이내	5,000 (졸업 시까지)		

### <개정안>

[별표 1] <삭 제>

고 시



#### 해남군고시제2017-13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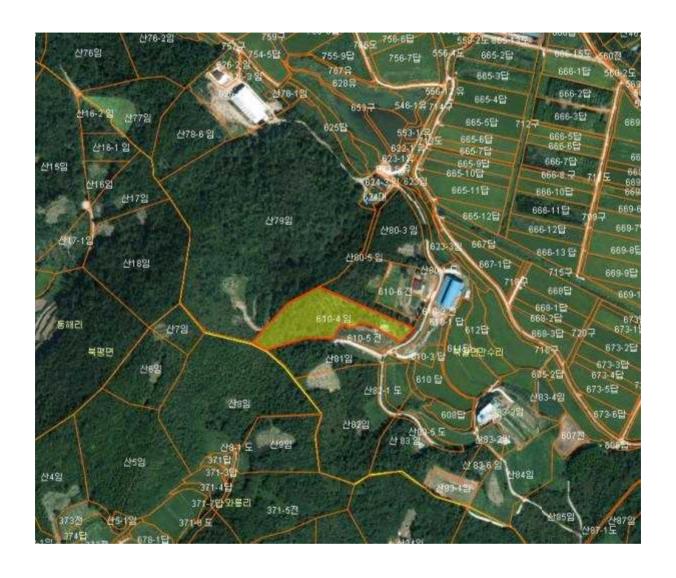
# 해 남 군



1. 사업의 목적	농지조성
2. 사업의 내용	임야를 전으로 조성
3. 사업의 구역	해남군 북일면 만수리 610-4번지(2,123㎡)
4. 사업비 소요액	14,971천원
5. 사업 예정기간	2017. 2. 3. ~ 2018. 2. 28.
6. 사업의 효과	농작물재배로 농가소득증대기여
7. 사업 시행자	전남 해남군 북일면 금당길 〇〇 / 윤〇〇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지역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합니다.

### ○ 위치도



#### 해남군고시제2017-14호

### 해남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고시

해남군 해남읍 해리 241-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해남군 고시 제2016-196호, 2016.12.19)되어 「주택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동법32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1.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 2.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도
- 3.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고시도

관계도서는 해남 군청 지역개발과(530-5914) 및 종합민원과(530-5474) 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 2. 8.

해남군수

##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7 43 73	دا دا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28	코아루더베스트	해남군 해남읍 해리 241-3번지 일원	_	증) 17,648	17,648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m')		결 정 사 유	
丁七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b>担 3 个 </b>	
신설	28	해남군 해남읍 해리 241-3번지 일원	-	17,648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를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7 H		면 적(m²)	구성비	ul –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고
합 계	17,648	-	17,648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7,648	_	17,648	100.0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교통시설

▷ 도로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사 기			사용	최 초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형태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94 (94)	중로 3-35	해성 공원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50호 (2000. 3. 24)	
기정	중로	3	35	12	국지 도로	565 (60)	중로 2-12	중로 2-12	일반 도로	해남군 고시 2009-77 (2009.6.24.)	

<sup>※ ( )</sup> 사업구역 내 연장

## ○ 공간시설

▷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	면 적(m²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28	녹지	완충녹지	해남읍 해리 241-3번지 일원	2,840	증) 21	2,861	해남군 고시 2016-177	

## - 완충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8	완충녹지	변경 증) 21 m² 2,840 m² → 2,861 m²	■주거지의 안정성 확보와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가구 번호	· 면적(m²)			획 지						
번호			_ (\/		ما جا	면적(m')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1	공동1	I	증)14,537	14,537	해남읍 241-3번		-	증)14,537	14,537	공동주택	
합	계	I	증)14,537	14,537			_	증)14,537	14,537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건축선, 형태, 색 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번호	위치 (획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 허용용도 : 주택법에 의한 APT 및 부대 복리시설	
		용적률	○ 300% 이하	272.02% 적용
		건폐율	○ 50% 이하	22.85% 적용
공동1	공동1	높 이	○ 20층 이하	
		배치	○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채광 고려 배치	
		형 태	○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자연스러운 형태의 지붕 계획 ○ 담장 : 가로경관 향상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및 투시형 담장 계획	

- 2.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도
- 3.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해남군공고제2017-136호

###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3-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열람공고

해남군 해리 144-1번지 일원에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3-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열람공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따라 관계도서를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 2. 7.

### 해남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남군 해남읍 해리 14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금강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명 칭 :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4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4.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7년 12월 31일

5. 사업규모

#### ■ (중로 3-1호선)

	규 모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형태	비고
결정	중로	3	1	12~15m 미만	국지도로	328	해리 159-2	해리 134	일반	
				비킨					도로	
시행	중로	3	1	12~15m 미만	국지도로	205	해리 144-1	해리 134	일반	
/1%	시행   중도   3	노   3   1		미만	국시조도	203	에너 144-1	에니 134	도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지역개발과(☎061-530-53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해남군공고제2017-137호

###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3-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열람공고

해남군 구교리 566-4번지 일원에 해남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3-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열람공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따라 관계도서를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 2. 7.

### 해남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566-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우진아트빌~호남정미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명 칭 : 도시계획도로 중로 3-11호선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4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4.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7년 12월 31일

5. 사업규모

#### ■ (중로 3-8호선)

	규 모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형태	비고
결정	중로	3	11	12~15m 미만	국지도로	366	구교리 920	구교리 518	일반 도로	
) all	2 7			12~15m	7-1-7	070	7 - 7 - 500 4	7 - 7   510	모도 일반	
시행	중로	3	11	미만	n 국지도로 270 구교리 566-4		구교리 566-4	구교리 518	도로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지역개발과(☎061-530-53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해남군공고제2017-171호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신규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 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 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 해 남 군 수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신규등록 내역

등 록 년월일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인(주 민)등록 번호	비고
2017.2.1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남해남 2017-09-01)	주식회사 마루토건	문 * 숙	전남 해남군 산이면 비석길 89	201411- 001****	신규 등록

끝.

#### 해남군공고제2017-172호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제4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 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 등록 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 해 남 군 수

## ◎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 수리내역

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법인(개 인)등록 번호	수리일자 (신고일자)	차기신고 기 간	비고
삼산가스 정 * 산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해남2004-24-01)	전남 해남군 삼산면 오소재길 963	730708- 118****	2017. 2. 10. (2017.1.19)	2020. 2. 10. ~ 2020. 3. 9.	

<sup>※ 2018. 2. 4.</sup> 주기적신고 폐지 시행예정. 끝.

#### 해남군공고제2017-181호

## 해남군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해남군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 해 남 군 수

#### 1. 규칙명

O 해남군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2. 제정이유

○ 「「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정보화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내용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 추진

### 3. 주요내용

- O 사랑의 중고 PC보급 및 군민 무료 정보화 지원 등 정보격차 해소(안 제9조)
- O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예산 등 지원(안 제9조)
- 4. 관련법령: 해남군 정보화 조례
- **5. 예고기간**: 2017. 2. 15. ~ 3. 7.(20일간)
-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남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9037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번지 해남군청 행정지원과(전화 061-530-5397, FAX 061-530-5579)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www.haenam.go.kr) 등

## 7. 기타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문의 사항은 해남군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061-530 - 53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남군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 해남군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안

「해남군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정보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보화 관련시설"이란 주전산기, 단말장치, 통신장비,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로그램 등 정보화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시설과 그 이용기술을 말한다.
  - 2. "전산실"이란 서버, 단말기 등과 스위치,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 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 3. "통신망"이란 각종 통신, 전산 장비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처리·보관 하거나 전송하는 조직망을 말한다.
  - 4. "전산교육장"이란 컴퓨터를 활용하여 컴퓨터 · 인터넷강좌 등을 개설 · 운영하여 정보 지식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시키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정보화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서면심의) 「해남군 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심의시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5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 2. 정보윤리 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 강화

- 3. 그 밖에 효율적인 정보보호 시책 추진
- ② 군수는 전산실을 「전라남도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 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정보화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정보화부서의 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 내에 주기적으로 갱신된 자료는 수시로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정보화부서의 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통신망 접속 시 보안대책) ① 통신망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자료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과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② 내부망과 외부망을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비인가자의 무단 침입 방지를 위해 인가자를 색출하고 차단하는 통신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내부망과 외부망을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내부망과 분리하여 외부망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거나 외부망 전용단말기를 별도로 설치·운영
    - 2.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
- 제7조(전산교육장의 기능)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전산교육장은 지역주민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기회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전산교육장의 운영) ① 군수는 연도마다 정보화교육의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전산교육장을 설치 · 운영함에 있어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에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④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 대하여 전산교육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워으로 하여금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격차 해소)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사랑의 중고 PC보급 및 군민 무료 정보화 지원
  - 2.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군정 주요시책 사업 · 관광 홍보 등에 대한 지원
  - 3.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예산 등에 대한 지원
  - ② 제2항, 제3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